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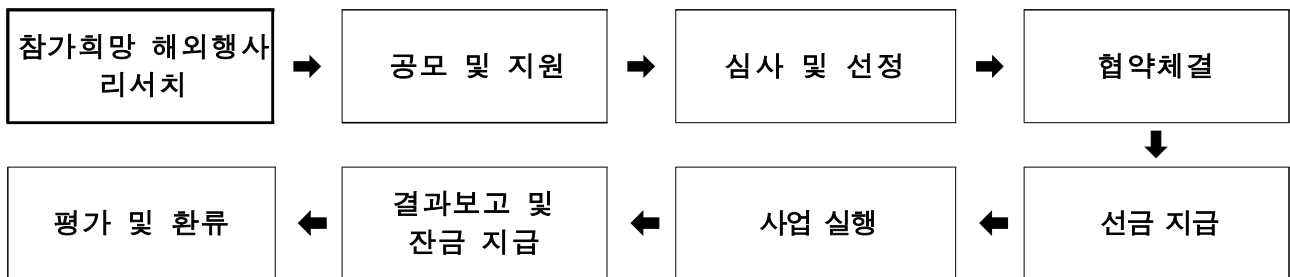
# 공연 및 전통예술 해외진출 지원(공통) 〈해외아트마켓 참가지원-프로모터〉

## 1. 사업 소개

### □ 사업 목적 및 취지

- 국내 공연 및 전통예술 작품의 해외 프로모션을 지원하고, 프로모터의 국제교류 역량을 위해 해외시장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

### □ 사업추진 절차



## 2. 공모 및 지원 내용

### □ 공모분야 및 공모주제

- 해외 공연예술마켓 및 월드뮤직마켓, 총회 등 개인(프로모터, 프로듀서, 기획자 및 단체 대표 등) 참가 지원
- 2019년 3월 ~ 12월 중 시행·완료되는 사업
- ※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할 시 지원 가능

### □ 지원 내용

- 국제왕복항공료, 숙박비, 참가등록비 등 일부
- 권역별 지원금 정액 차등 지급

## 3. 지원 신청

### □ 신청자격

- 영어나 현지어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자, 비자발급 결격사유가 없는 자

□ 신청기간 : (1차) 2019년 2~3월, (2차) 2019년 5~6월 (예정)

### □ 제출서류 및 자료

- (필수) ① 공모지원신청서  
② 이력서
- (선택) ① 사업성과 및 활동 증빙자료 등

신청서 제출 방법

-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(<http://www.gokams.or.kr>) 접속 후 안내절차에 따라
  - 해외아트마켓 참가지원 이메일([promokams@gokams.or.kr](mailto:promokams@gokams.or.kr)) 로 신청
- ※ 우편, 직접 방문 접수 불가

#### 4. 지원 심의

심의 방법 및 내용

- 심의 방법
  - 행정검토 : 지원가능 대상 여부 및 제출 서류 검토
  - 서류심의 : 신청서를 토대로 심사위원 서면심사
- 심의 기준

구분	항목	세부 내용	가중치(%)
서류심의	신청인 활동성과	신청인의 활동이력과 향후 활동계획(성과)	40
	사업 추진전략	신청인의 프로모션 전략과 해당 행사의 적합성	30
	신청인 수행역량	신청목적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	30

전년도 평가 반영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#### 5. 지원제외대상 및 유의사항

지원제외대상

- 기획재정부의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해당하는 단체
- 문화체육관광부의 「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」 제7조제4항(보조사업자 선정기준)에 해당하는 단체(2018.03.30.개정)
-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(불공정행위의 금지)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및 개인
- 한국문화예술위원회, 국제교류재단 등 국내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는 사업
- 국·공립(도, 시, 군립) 및 그 산하 출연단체 사업
- 초·중·고·대학생만으로 구성된 단체사업 (아마추어 단체 사업 포함)
- 학교, 학원, 종교기관, 친교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 사업
- 상업적 목적이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단체 사업

#### 6. 문의처

-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산업진흥실 공연유통팀 (공연)02-708-2294  
(전통)02-708-2276